

SEIU 헌법 제 VI 조 개정 결의

이에: SEIU 와 그 지부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노조인 Union Power 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있습니다.

이에: 모든 근로자는 자신을 대표하는 결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.

이에: 노동자의 집단적 목소리와 힘은 민주주의 원칙, 지역 노조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.

이에: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면 모든 근로자가 자신에게 영향이 있는 결정에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

이에: SEIU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SEIU 지부 임원과 다르기 때문에 SEIU 지부 임원으로 선출된 동시에 SEIU 이사회 임원으로 선출된 회원의 지부 임기는 SEIU 이사회 임원 자격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이에: 이 경우, 전 지역 사무관이 SEIU 이사회 임원으로서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면 자신의 SEIU 지부의 의사나 SEIU 의 안녕 및 복지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서 SEIU 및 그 지부가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.

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. 제 VI 조(임원), 2 항(IEB 임기)에는 "지부에서 국제 이사회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국제 이사회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, 국제 이사회 임원으로서의 임기는 즉시 종료되며 제 VII 조의 충원 절차가 적용됩니다"라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.

추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. 제 VII 조(충원)에는 "제 VI 조 2 항을 실행함으로 인해 국제 이사회 임원 중에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, 이러한 공석이 발생한 후 90 일 이내에 과반수

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제 이사회 임원이 잔여 임기 동안 공석을 채우게 됩니다"라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.

Joe Donahue

NYS Public Employees Federation -- SEIU Local 4053

PEF Council Leader Division 190

PEF Executive Board Seat 487

NYS Dept. of Taxation and Finance(뉴욕주 세무 및 재무부)